

## 2021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1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 묵인희

### < 2021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R&D 추진방향 >

2021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R&D는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혁신적·창의적 연구주제 및 기법 도입을 통한 치매극복 핵심기술 발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성·접근성 높은 치매극복 기술 발굴 및 고도화

#### 2021년도 전략목표

치매핵심기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기반 확보,  
치매연구자-타분야 연구자간 교류 강화로 미래 혁신역량 강화

#### 6대 분야 중점 추진방향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	① 지속가능 기술혁신을 위한 성과·데이터 교류 활성화 지원 ②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융·복합 분석기술 R&D
공익적 R&D 투자 강화	③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예측·진단기술 개발 ④ 치매 예방·관리 중심의 국민 체감형 기술개발 지원 강화
기초·임상 중개연구 생태계 조성	⑤ 국가치매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 플랫폼 구축 ⑥ 글로벌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매 인프라 구축

# I.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평가절차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과제구성 요건	선정예정 과제수
1.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1-2. 치매연구의 기반기술구축을 통한 신경보호인자 탐색	·유전적 변이 치매환자 관련 인지에비능 규명 11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83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구성가능	1
3.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3-1. 치매치료제 개발	· 임상1상 6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산·학·연·병	· 세부과제 구성가능 · 기업참여 필수	1

## Ⅱ. 신청요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신청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에 의거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1.1.1.)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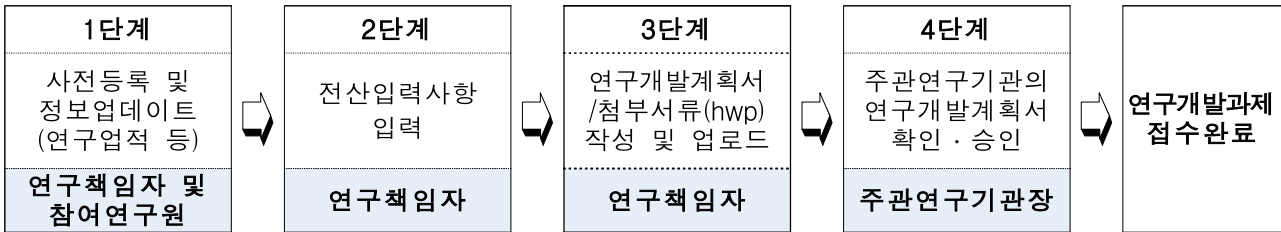
### Ⅲ.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연구자(연구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 □ 서류제출기한

공고단위 (RFP)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전산입력)	주관연구기관 인증 마감일시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1-2. 치매연구의 기반기술구축을 통한 신경보호인자 탐색	<b>2021. 03. 04</b> <b>16 : 00</b>	<b>2021. 03. 05</b> <b>16 : 00</b>
3-1. 치매치료제 개발(임상1상)		

※ **신청 마감시간(16: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IV.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 V. 기 타

### □ 참여기업 부담금(세부과제별 산정)

-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부담액의 15% 이상	부담액의 13% 이상	부담액의 10%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0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으로 함
- ※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 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2명 인건비 감면)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사업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 대상과제는 RFP에 표기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

## VI. 문의처

### ○ 홈페이지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http://www.msit.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http://www.mohw.go.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담당자 안내

구분	공고단위(RFP)	사업내용(RFP)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사항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1.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1-2. 치매연구의 기반 기술구축을 통한 신경보호인자 탐색	R&D기획팀	02-3668-7390	평가관리팀	02-3668-7392
3.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3-1.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1상)	배현정		김보미	